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866호(號) 1933(昭和 8)년 3월 3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23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 할인입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중(中) 1933(昭和 8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3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국선(局線) 내(內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초(蠟燭)의 항(項) 앞[前]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역청(靑) | 겸이포(兼二浦) | 경성(京城), 서평양(西平壤), 사동(寺東), 기양(岐陽) | 차 급(車扱) | 1할(割)5푼(分) 감(減)  
동(同) 연탄(煉炭)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중(中) 「기양(岐陽)」의 아래[下]에 「영안(永安)」을 추가(追加)함.

동(同) 해탄(骸炭)의 항(項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반성(半成) 코크스(cokes) | 영 안(永安) | 경성(京城), 흥남(興南) | 차 급(車扱) | 3할(割)5푼(分) 감(減)  
동(同) 말(馬: 종마[種馬] 및 경마회출장[競馬會出場]의 것)의 항(項) 기사란(記事欄) 중(中) 「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(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)」을 「조선총독부 종마목장(朝鮮總督府種馬牧場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국선(局線)과 내지(內地) 간(間) 발착(發著: 부산경유[釜山經由])의 부문[部] 선족대(跣足袋)의 항(項)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보통품 (普通品)	우메다 (梅田)	대 구 (大邱)	차 급 (車扱)	엔(円) 4.57	1 본(本) 화물(貨物)은 1개(箇)의 길이[長] 4.5m, 중량(重量) 500톤(噸) 또는 용적(容積) 2입방미터(立方米)를 초과(超過)하지 아니한 것에 한(限)함 2 본(本) 화물(貨物)에 대한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噸數)는 14톤(噸)으로 함 3 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3호(號) 적용상(適用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
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국선(局線)과 만주(滿洲) 간(間) 발착(發著)의 부문[部] 석탄(石炭: 본계호 세분탄[本溪湖洗粉炭])의 항(項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해탄(骸炭) | 본계호(本溪號) | 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 | 차급(車扱) | 401kg(斤) 이상(以上) 2할(割) 감(減)